

---

4단계 BK21 서비스디자인 기반의 사회혁신 교육연구팀

---

## 사업팀 자체 관리 운영 규정

---

1. 참여교수 관련 규정
2.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관련 규정
3.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및 규정
4.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및 규정
5. 연구지원금 운영규정
6. 운영위원회 규정
7. 행정직원 활용 지침 및 규정
8. 별첨자료

2020. 09

**동서대학교 서비스디자인 기반의 사회혁신 교육연구팀**

**제1조 (선정 조건)**

- ① 사업팀 참여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해야 한다.
1.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2. 대학원 전일제 지도학생이 있는 교수이어야 한다.
  3. 사업팀에서 정한 참여교수 연구실적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4. 지도하는 참여대학원생이 정해진 연구실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5. 사업팀에서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팀에 참여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팀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팀에 참여 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장 중에 있는 교수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조 (교체 및 추가 기준)**

- ① 사업팀 참여교수는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체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사업팀장이 주최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1.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참여교수의 연구 성과에 준하는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참여교수가 연구 및 학생지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팀 참여교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② 참여교수 감소요청을 할 경우, 해당 교수의 감소 시점에서 공문으로 한국연구재단에 감소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감소인 경우, 감소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참여교수 증원을 통해서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실적 기준)**

- ① 사업팀의 참여교수는 참여 기간 중 다음의 업적을 달성해야 하며, 만일 연구실적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참여교수 선정 여부는 사업팀장이 주최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1. 매년 해외 학술지 또는 국내 등재/ 등재 후보 학술지 1편 이상 게재하거나 또는 해외 개인전 또는 국내 개인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매년 논문 또는 전시 실적에 최소 70%를 완수해야 한다. (국내 등재 학회지 1편 단독의 경우 100%, 해외 개인전 1회 100%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4조 (성과급 지원 규정)**

- ① 사업팀 참여교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참여교수 가운데 연구 및 산학 성과 실적이 우수한 참여교수를 선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1.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액은 사업팀장이 예산을 감안하여 사전 공고하며, 연구실적 기준을 달성한 참여교수에 자격을 부여한다.
  2. 지급 순위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별표1-1」에 의거하여 환산점수로 우수 참여교수를 선정한다.
  3. 사업팀장 주최 하의 별도 회의를 거쳐, 성과 결과 확인 절차를 거쳐 우수 참여교수를 선정한다.

**제1조 (정의 및 선정)**

① 학술활동(논문게재, 학술발표, 공모전 등)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를 참여대학원생이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준하는 자는 사업팀장이 주최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별표2-2', '별표2-3' 참조 )

1.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석사 또는 박사 재학 중인 학생.
2.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 전일제 학생.
3.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으로 참여교수가 추천한 자.
4. 학기당 시간 강의 시수가 6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자.
5. 한국 학생을 우선 선발
6. 수료생일 경우 연구생등록을 한 자.

②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지원대학원생이라 하며, 연구실적 및 사업팀 운영 공헌도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 '별표1-1' 연간 실적 평가 기준표 참고 )

**제2조 (변경)**

① 졸업, 취업, 휴학, 지도교수 변경,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팀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학위 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4학기)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8학기)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제3조 (연구실적 최소기준)**

① 학술 활동 지원 및 연구장학금 수혜를 위한 연구실적 최소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차년도(2020.09.01.~2021.02.28.)기준 / 7차년도 동일한 기준

	국내 등재지 게재	기타국제학술지 게재	학술발표
석사 1년	0건		1건(국내)
석사 2년	1건		1건(국내)
박사	1건		1건(국내외 선택)

- 2차년도 ~ 6차년도 (2021.03.01.~ 2027.02.28.) 기준

	국내 등재지 게재	기타국제학술지 게재	학술발표
석사 1년	0건		2건(국내)
석사 2년	2건		1건(국제)
박사 1년	1건		1건(국내)
박사 2년	1건(SCI, SSCI / SCI-E, Scopus) 혹은 KCI 2건		1건(국제)
박사수료 후	1건(SCI, SSCI / SCI-E, Scopus) 혹은 KCI 2건		1건(국제)

② 2항에 근거하여 연구실적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선정 여부는 사업팀장이 주최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제4조 (연구장학금 수혜 절차 및 지급 방법)**

① 사업팀의 사업계획에 따라 선발하며, 선발 인원은 해당연도 사업공고문에 따른다.

1. 지도교수 추천서와 관련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팀에 제출한다.
2. 연구실적 및 사업 운영 공헌도 평가를 통해 연구장학금 수혜대상자를 결정한다. ( '별표1-1' 연간 실적 평가 기준표

참고 )

3. 수혜대상자(지원대학원생)는 개인계좌로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부지원금 입금 일정에 맞추어 일괄 지급될 수도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학원생은 사업팀에서 주 40시간 이상 연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4호, 5호에 해당하는 지원대학원생 중 해당 기간동안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도교수 및 사업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 연구실로 복귀 시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1. 졸업자
2. 휴학자
3. 취업자
4. 해외 트렌드 및 연구목적을 가지고 출국 및 타지역 방문하는 자
5. 인턴쉽으로 인하여 출국 및 타지역 방문하는 자

### 제5조 (차등/변동 지급)

① 지원대학원생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실적이 우수하거나, 사업팀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준 학생들에게는 평가를 통하여 별도의 성과급 장학금을 지급한다. ( '별표1-1' 연간 실적 평가 기준표 참고 )

1. 선발 인원 및 지급액은 사업팀장이 해당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지급대상은 사업팀장이 주최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2. 학생이 제출한 연구실적을 토대로 '별표1-1' 실적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3. 선발 인원 및 지급 순위는 사업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학생에게 차등 지급한다.
4. 지급을 위해서는 사업팀장이 주최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5. 성과급 장학금은 대학생 연구장학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1년간의 연간 실적을 평가하여 별도의 성과급을 2월 연구장학금 지급 시 차등/변동 지급할 수 있다. ( '별표1-3' 성과급 지급 실적 평가 기준표 참고)

③ 6개월간의 서비스디자인 관련 실적을 평가하여 건별 성과급을 학기 말(8월, 2월) 연구장학금 지급 시 차등/변동 지급할 수 있다. ( '별표1-2' 서비스디자인 관련 실적 평가 기준표 참고 )

### 제6조 (수혜제한 및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수혜 제한자로서 사업 참여를 일정 기간 내에 참여 할 수 없다.

1. 연구실적물 미제출자
2. 4단계 BK21 사업 규정(주 40시간 이상 연구 참여)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사업팀 운영에 비협조적인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환수 대상자로서 사업팀장이 주최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혜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장기 결석자
2. 졸업 전 취업자
3. 휴학생
4. 그 외 기타 사유

**제1조 (임용자격 및 절차)**

- ① 대학의 장 및 사업팀의 장은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신진연구인력 채용 시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사업비 지원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계약 불이행 시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 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목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 ⑥ 박사후과정생(리서치펠로우 포함) 및 계약교수의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사업팀 내 교육연구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로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조 (박사후과정생)**

- ①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사업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 분야가 사업팀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의 장 및 대학의 승인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 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제3조 (계약교수)**

- ①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디자인·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팀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에게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 분야가 사업팀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의 장 및 대학의 승인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 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 **제4조 (성과급 지원 규정)**

- ①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실직 및 사업 운영 공헌도를 「별표1-1」에 의거하여 사업팀장이 주최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 ② 성과급 지급금액은 사업팀장이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사전 공고한다.

**제1조 (임용자격 및 절차)**

- ① 대학의 장 및 사업팀의 장은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신진연구인력 채용 시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의무와 책임, 사업비 지원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계약 불이행 시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의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 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목의 경우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제4조 (성과급 지원 규정)**

- ①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실적 및 사업 운영 공헌도를 「별표1-1」에 의거하여 사업팀장이 주최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 ② 성과급 지급금액은 사업팀장이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사전 공고한다.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사업팀에서 참여인력(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의 연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글로벌 디자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를 연구 활동 조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비 지원내용 및 집행관리)**

- ① 당해연도 예산에 따른 연구장학금, 인건비, 학술활동비(논문게재, 발표논문, 전시 등), 성과급 등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 ② 집행에 있어 4단계 BK21사업 규정 및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상위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 (국제화경비)**

① 국제학회 논문발표 및 참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4개국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2.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이어야 한다.
3. 총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제 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학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단, 권위 있는 국제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4.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제3조의1 (기타 국제화경비)**

① 사업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제 학술대회, 전시회 또는 공동 워크숍 등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4개국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2.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이어야 한다.
3. 총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 (단기해외연수)**

① 국제학회 참여 및 국제전시회 출품 활동(단,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는 교육연구단(팀) 운영비에서 집행한다)을 15일 이내로 다녀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회는 국제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③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15일 이내)는 MOU 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및 현지 연구수행 시 지원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 제5조 (장기해외연수)

- ① 교육훈련비(수업료, 숙박비,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는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내의 체재비(필요한 경우 수업료 별도) 지급이 가능하다.
- ② 해외 인턴십 활동경비의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에 따른 국외 체재비를 지급한다.
- ③ 연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 해당 연수 기간동안 대학원생 지원비 지급 불가하다
- ④ 장기해외연수 시 동반 교수 관련 경비 집행 불가하다.

### 제6조 (해외학자 초빙)

- ①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며, 초빙 수당(여비, 체재비 등)을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② 해외학자 강사료는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 ④ 해외학자 초빙경비 지급 시 실제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7조 (신청절차)

- ① 사업팀에 구비된 신청서류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

### 제8조 (선정)

- ① 신청서류 검토 및 집행 적격 여부를 사업팀장이 주최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선정한다.

### 제9조 (결과보고서)

- ① 학술활동비(논문게재, 발표논문, 전서 등)를 지원받은 지원자는 활동 기간 완료 후 1개월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 (예산 이월액)

- ① 예산의 효율적 진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한정한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이월 가능 범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예산변경)

- ① 국고 예산 부족할 경우 산단 간접비로 협의하여 지원한다.

### 제12조 (기타사항)

-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팀장이 따로 정하며,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내부규정에 따르거나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따로 정한다.

- ② 사업팀 회의비는 동서대학교 및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교외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 <제18조 연구(사업)비 비목별 정의 및 계상기준(2023.06.01. 개정)>을 따른다.

1. 회의비의 1인당 단가는 5만원 이내로 한다. 주말, 공휴일, 회의 장소와의 원거리 지역에서 회의 식대는 불인정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심야(23:00~06:00) 사용 시, 불인정한다.

2.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참석자 서명 날인을 생략한다.

3. 제출서류 : 서명 또는 날인된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포함), 신용카드매출전표 <개정 2023.06.01.>

**제1조 (구성)**

- ① 사업팀장을 포함한 참여교수 1/3 이상으로 구성된다. 단, 운영위원회 구성은 사업팀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임기)**

- ① 4단계 BK21사업 수행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팀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 ① 사업팀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선정, 연구실적 및 사업팀 공헌도에 대한 평가, 연구장학금(성과급 장학금 포함) 수혜 대상자 등을 선정한다.
- ② 교육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지침에 대한 수렴 및 조정, 연구 활동 프로그램 수행 및 예산 조정 등 결정한다.
- ③ 사업팀 운영 규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 발생 시 방안 모색 등 의견 수렴한다.

**제1조 (임용자격 및 절차)**

- ① 대학의 장 및 사업팀의 장은 4단계 BK21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업팀 소속 행정직원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사업팀 행정직원의 계약 기간은 사업 종료 시점까지이며, 매년 1년씩 재계약할 수 있다.
- ③ 사업팀 행정직원은 채용 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2조 (성과급)**

- ① 행정직원은 업무평가서를 토대로 평가 및 회의를 거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될 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성과급 지급금액은 사업팀장이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업무평가를 통해 차년도별 1회 지급할 수 있다.

'별표1-1' 연간 실적 평가 기준표

구분	기준	배점기준	점수 환산방법
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 (SCI, SCIE, SSCI, SCI-E)	20	주저자, 교신저자 : $2/(n+1)$ 공동저자 : $1/(n+1)$  n : 논문 건당 총 저자 수
	국제일반학술지(Scopus)	15	
	국내등재(후보)학술지	10	
	국내일반학술지	5	
학술대회발표	국제 (BK사업 규정에 충족)	5	n : 논문 건당 총 저자 수
	국내	2	
전문학술저서	국제	20	$1/n$ n : 학술저서 건당 총 저자 수
	국내	10	
전시	국제	2	$2/(n+1)$ n : 전시회(전시회 당 총 작품제출자 수) 공모전(수상작품 건당 참여자 수)
	국내	1	
공모전(수상)	국제	10	
	국내	5	
특허등록(출원)	국제등록	20	$1/n$ n : 특허등록(출원)건당 총발명자 수
	국제출원	10	
	국내등록	5	
	국내출원	3	
기술이전	1천만원 이상	10	$(1/n) \times 1.5$ n : 계약서에 명시된 개발자 총인원 수
	1천만원 미만	5	
산학 R&D 프로젝트	동서대학교 또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약된 과제	3	$(1/n) \times 1.5$ n :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참여연구원 총인원 수

※ 장학생 선발 우선순위

- 1순위: 영어점수 우수 학생 또는 해외 우수 저널 실적이 있는 학생 우선 선발  
(국적 제한 없음, SCI, SSCI / SCI-E / Scopus 순으로 선발)
- 2순위: 동일한 조건일 경우 국내 학생 우선 선발

'별표1-2' 서비스디자인 관련 실적 평가 기준표

구분	기준	배점기준	점수 환산방법
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 (SCI, SCIE, SSCI)	20	주저자, 교신저자 : $2/(n+1)$ 공동저자 : $1/(n+1)$  n : 논문 건당 총 저자 수
	국제일반학술지(Scopus)	15	
	국내등재(후보)학술지	10	
	국내일반학술지	5	
학술대회발표	국제 (BK사업 규정에 충족)	5	n : 논문 건당 총 저자 수
	국내	2	
전문학술저서	국제	20	$1/n$ n : 학술저서 건당 총 저자 수
	국내	10	
전시	국제	2	$2/(n+1)$ n : 전시회(전시회 당 총 작품제출자 수) 공모전(수상작품 건당 참여자 수)
	국내	1	
공모전(수상)	국제	10	
	국내	5	
특허등록(출원)	국제등록	20	$1/n$ n : 특허등록(출원) 건당 총발명자 수
	국제출원	10	
	국내등록	5	
	국내출원	3	

기술이전	1천만원 이상	10	(1/n)×1.5 n : 계약서에 명시된 개발자 총인원 수
	1천만원 미만	5	
산학R&D 프로젝트	동서대학교 또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약된 과제	3	(1/n)×1.5 n :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참여연구원 총인원 수

**'별표1-3」 성과급 지급 실적 평가 기준표**

구분	기본 (X)	저자 계수		산출 기본수식	
		주저자/교신저자 (a)	공동저자 (b)		
논문 실적 (i)	SCI/SSCI/A&HCI	4	단독: 1 2인: 0.8 3인: 0.7 4인: 0.6 5인: 0.5	3인: 0.3 4인: 0.2 5인: 0.1	$N = \frac{(X_i * a + X_i * b) + (X_o * a + X_o * b)}{S}$
	SCOPUS/국내우수등재	3			
	일반등재지	2			
	등재후보지	1			
발표 실적 (o)	해외학술발표(4개국이상)	0.5	4인: 0.6 5인: 0.5	5인: 0.1	
	국내학술발표	0.3			

**'별표2-1」 사업팀장 및 참여교수 변경 처리기준**

<b>(연구실적 요건)</b>
<b>미래인재양성사업</b>
○ 인문사회분야 : 전체 참여교수(사업단(팀)장 포함)의 1인당 평균 연구실적이 최근 5년간 3편 이상

[4단계 BK21사업 사업단(팀)장 및 참여교수 변경 처리기준]

**'별표2-2」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내용	조치 사항
1) 소속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의 지도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학생 : 사업 기간에 휴학한 경우</li> <li>제적생 : 사업 기간에 제적된 경우</li> <li>비참여교수의 지도 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 (연구생등록 포함)해야 함</li> <li>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li> </ul>
2) 연한	입학 후 석사 2년, 입학 후 박사 4년, 6년이 경과 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사 : 입학 후 2년 이상</li> <li>박사 : 입학 후 4년 이상</li> <li>통합 : 입학 후 6년 이상</li> <li>※ 단, 기간 산정 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li> <li>매년 4/1, 10/1 기준 참여 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li> </ul>
3) 전일제	다른 직업 없이 사업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기간에 취업한 경우</li> <li>비전일제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li> </ul>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

**'별표2-3」 4단계 BK21사업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

구분	비전일제 기준	조치사항
자격증/명의대여	매년 4/1, 10/1 기준 자격증/명의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증/명의대여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li> <li>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명의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명의대여 상태에서 기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li> </ul>
조교 근무자	매년 4/1, 10/1 기준 행정조교 (교직원 역할 수행) ※기타 조교는 대학 자체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조교 신분인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li> <li>매년 2번의 기준일에 행정조교로 판명된 경우 기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li> </ul>

파트타임 업무	사업단의 장 승인 없는 학업/연구수행에 지장이 있을 만한 파트타임 업무	◦ 사업단의 장이 판단하되, 수시점검 시 비전일제로 판명될 경우 연구장학금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시간강사	매년 4/1, 10/1 기준 주 6시간 초과 시간강사	◦ 주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강의 학생은 참여대학원생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주 6시간 초과 시간 강의자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기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타 프로젝트 참여	사업단의 장 승인 없는 참여	◦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사업단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

### 별표3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

(※ 학술진흥법은 2021년 1월 1일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제40조 제4항, 제49조 대학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하는데 장학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영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영 제12조 제5항에 따른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원의 연평균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학생연구원이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정(안)]